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27
----------	-------

발의연월일 : 2026. 5. 20.

발 의 자 : 이종배·엄태영·이만희
안철수·김형동·김미애
김예지·이달희·송석준
김은혜·김승수·이종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

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납품대금”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품대금”으로 한다.

-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 기업등에 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